◈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-475호

정비구역등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

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4조의3제4항제2호 및「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」 제4조의3제3항에 따라 추진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정비구역등에 대하여 같은 법 제4조의3제7항에 따라 해제 고시하고,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2017년 12월 28일
서 울 특 별 시 장

1.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및 정비구역 해제 : 1개 구역
   가. 「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」 제4조의3 제3항 제2호

구역해제 현황

□ 정비예정구역 변경(해제)

구분	동명	지번	면적(㏊)	계획용적률 (%)	건폐율 (%)	층수	추진 단계	주택 유형	정비예정(변경)구역지정일 (고시번호)
기정	독산동	958-32	10.5	190 이하	60 이하	평균 10층	2	단독	2010.11.25. (서고시 2010-425호)
변경	해 제								

□ 정비구역 변경(해제)

구분	구 역 명	위 치	사업방식	면 적(㎡)	정비구역지정일 (고시번호)
기정	독산2 주택재건축 정비구역	금천구 독산동 958-32일대	주택재건축	105,309	2010.11.25. (서고시 2010-425호)
변경	해제				

구역해제 현황

□ 정비계획 변경(해제)
○ 용도지역·지구(구역지정 이전상태로 환원)
○ 토지이용계획 : 폐지(구역지정 이전상태로 환원)

결정 구분	구 분		면적(㎡)	구성비(%)	비고
기정	합 계		105,309.0	100.0	
	정비기반 시 설	소 계	27,217.0	25.8	
		도 로	15,627.0	14.8	
		어린이공원1 (지하주차장1)	5,358.0 (950.0)	5.1 (0.9)	
		어린이공원2	2,022.0	1.9	
		학 교	3,757.0	3.6	
		사회복지시설1	284.0	0.3	
		사회복지시설2	169.0	0.2	
	택 지 (획 지)	소 계	78,092.0	74.2	
		획지1	53,652.0	51.0	공독주택부지
		획지2	22,765.0	21.6	
		획지3	1,675.0	1.6	종교시설
변경	정비구역 해제에 따른 폐지				

○ 건축시설계획(폐지)

결정 구분	가구 또는 획지 구분		위치	주된용도	건폐율 (%)	용적률 (%)		높이(m) 층수	비고
	명칭	면적(㎡)				정비 계획	예정법적 상한		
기정	획지1	53,652	금천구 독산동 970-4번지 일대	공동주택 및 복리시설	25 이하	249.26 이하	249.26 이하	80m이하 (평균18층이하)	
	획지2	22,765	금천구 독산동 958-32번지 일대	공동주택 및 복리시설					
	획지3	1,675	금천구 독산동 981-6번지 일대	종교시설	관계법령에 따름				
	획지4	284	금천구 독산동 958-92번지 일대	사회복지시설1	관계법령에 따름				
	획지5	169	금천구 독산동 981-28번지 일대	사회복지시설2	관계법령에 따름				
	획지6	3,757	금천구 독산동 982번지 일대	학교	관계법령에 따름				
변경	정비구역 해제에 따른 폐지								

※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4조의3제5항에 따라 정비구역등이 해제된 경우에는 정비계획으로 변경된 용도지역, 정비기반시설 등은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

2. 지형도면(해제) : 첨부 도면과 같음

3. 구역 지정의 실효 사유와 실효일
   ○ 실효사유 :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4조의3에 의한 정비구역등 해제
   ○ 실 효 일 : 고시일

4.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고시 관련 세부내용은 서울특별시 도시재생본부 주거사업과(☎2133-7229)와 금천구 주택과(☎2627-1617)에 관계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.

붙임

정비구역등 해제 도면

□ 독산2 주택재건축 정비구역

○ 위치도(금천구 독산동 958-32번지 일대)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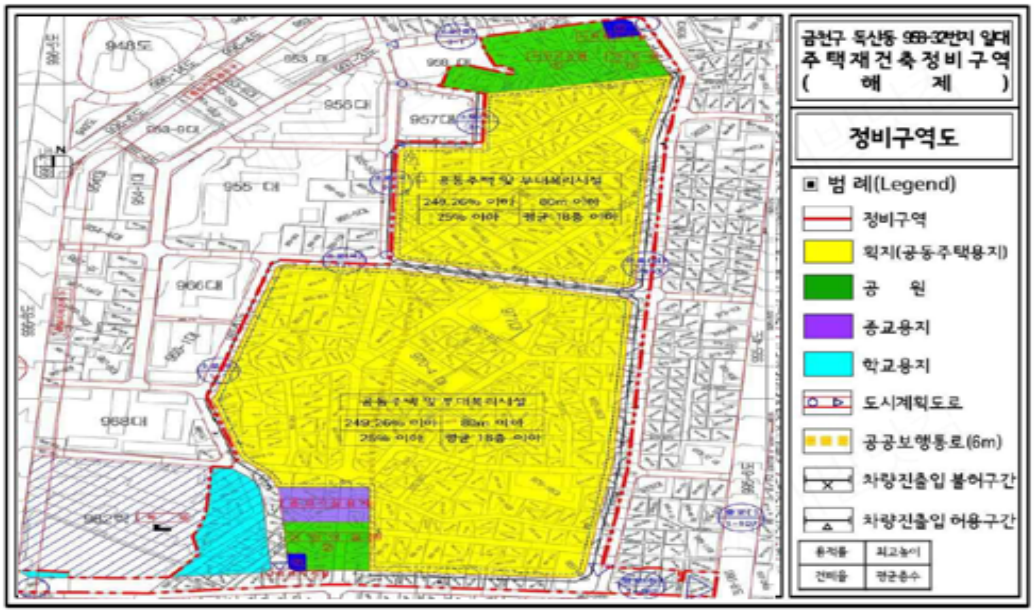
○ 정비구역도(해제)